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사유 정비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1243호)

2026.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사유 정비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9. 9.
3. 회 부 일 : 2026.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사유 정비

- 개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¹⁾에 따라 현행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 중 수사를 받는 경우와 관련하여, ① 수사의 주체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중대범죄수사청,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 ②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단계에서도 종전과 같이 현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공소청으로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하며,
- ③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추가(제1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에 따라 감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음.

현행	개정안
<u>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u> <u>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 (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u> <u>3.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u>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및 검사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송치된 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처분 등을 담당하는 공소기관으로 법적 기능이 변경되어 검찰청 및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개정안은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현행법 상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인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외에,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음.

기존과 같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여 절차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의원면직의 제한 사유가 선고 이전의 모든 단계(수사 → 송치 → 기소 → 선고)를 포괄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²⁾가 있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와 기소(공소청) 담당 기관이 분리되면서 기소된 경우에도 의원면직이 제한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치³⁾로 이해되며,

금융감독원 임원의 비위행위가 확정되어 선고되기 이전에 의원면직을 제한하려는 현행법 제32조의2의 도입 취지⁴⁾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2) 검사의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나 공판 대응을 위한 조사 등 진행 가능

3) 수사 중인 경우 대비 기소 후에는 비위의 확정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기소 후에 의원면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4) 동법 제3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임 가능

< 관련 입법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